

# 기업구조혁신펀드(Ⅲ)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2021년 기업구조혁신펀드(Ⅲ)(이하 “모펀드”)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선정 개요

### 1-1. 블라인드, 모펀드 제안방식

항 목	내 용					
선정 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 총 6개사 이내에 대하여 3,000억원 배정 (단위: 억원)					
	리 그	모펀드 출자총액	선정 운용사 수	운용사별 배정금액	펀드별 최소결성금액	모펀드 출자비율
	PEF	1,250	2개 이내	각 750 / 500	각 1,875 / 1,250	40% 이내
	PDF	1,000	2개 이내	500	1,000	50% 이내
	PEF(루키)	750	2개 이내	375	625	60% 이내
	소 계	3,000	6개 이내		총 6,375	
	○ 운용사별 출자금액은 선택적으로 제안하되,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실제 배정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운용사가 리그 및 투자기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하되 리그별 중복신청은 불가 (단, 루키 운용사도 일반리그 지원 가능) ○ 루키리그의 펀드별 “최대”결성규모는 750억원으로 제한 (루키 지원 요건은 “3-4. 루키리그 별도 안내사항” 참조)					
접수일시	2021년 6월 4일(금) 09:00 ~ 16:00					
심사결과 발 표 펀 드 결 성 시 한	2021년 6월 30일(수)					
사 후 적 매 칭	○ 연내(21년 12월 31일)결성					
	○ 신속한 투자와 자금모집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펀드결성 이후 他펀드와의 공동투자 등으로 민간자금 최소매칭요건을 달성하는 방식 ○ <b>제안서 제출 시 운용사가 사후적 매칭의 적용 여부를 선택</b> 하며 모펀드 및 운용사 출자금으로 결성가능 (단, 한국성장금융과 사전 협의 필요) ○ 투자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하위펀드 민간자금 매칭실적이 <b>의무 민간 자금매칭요건*</b> 을 상회하여야 함** * 매칭금액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성장금융이 정함 ** 투자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사후적 매칭 달성 실패 시, 운용사 제제 가능 ※ 공고문 내 붙임자료(Page 12)를 참고					

## 1-2. 프로젝트, 운용사 제안방식

항 목	내 용
위탁운용 금액 및 선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1,510억원에 대하여 운용사 자율제안(재원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및 선정)</li> <li>○ 모펀드 출자금액 기준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 투자전용</li> </ul>
모펀드 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견·대기업 투자 시 : 약정총액의 50% 이내</li> <li>○ 중소기업 투자 시 : 약정총액의 60% 이내</li> <li>* 상기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모펀드 출자비율은 한국성장금융이 정함</li> </ul>
펀 드 결 성 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li> <li>*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li> </ul>

## 1-3. 공통사항

항 목	내 용
운용사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결성과 업무의 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국내에 설립된 법인</li> <li>- 공동운용(Co-GP) 시에는 제안펀드 운용상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li> </ul>
출자대상 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li> <l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li> <l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li> <li>○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li> <li>*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 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신청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li> </ul>
운 용 사 선 정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li> <li>-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li> <li>○ 회생법원, 채권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구조조정 유관기관과의 투자 및 사업 연계방안을 통해 민간주도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서상 제시할 경우, 운용사 선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li> <li>* 한국성장금융 : <a href="http://www.kgrowth.or.kr">www.kgrowth.or.kr</a></li> </ul>

## 2. 투자대상

### □ 주목적 투자대상

- 법인 형태의 중소·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구 분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블라 인드 펀드	P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li> <li>①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단,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기지원목적으로 약정총액의 30%이상 투자</li> <li>②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35% 이상 투자</li> </ul>
	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li> <li>①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기지원목적 중 DIP Financing으로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단, 자금대여, 사채 등 순수부채 형태로 약정총액의 30%이상 투자하고,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기지원목적으로 약정총액의 30%이상 투자</li> <li>②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35%이상 투자</li> </ul>
	PEF (루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li> <li>①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약정총액의 60%이상 투자 - 단,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기지원목적으로 약정총액의 30%이상 투자</li> <li>②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50%이상 투자</li> </ul>
프로젝트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 - 단,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는 재기지원목적 등 구조조정 투자에 한함</li> </ul>	

주) 주목적 투자대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고문 내 붙임자료(Page 9) 참조

- PDF의 경우 투자기간 내 회수를 완료한 건 중 원금에 한하여 주목적 투자 대상\*에만 재투자를 허용(재투자기간은 투자기간 + 2년까지 가능)

\* 재투자한 금액은 주목적 투자금액 산정 시 제외

- 단, 재투자는 약정총액의 70%를 소진한 이후부터 가능하며, 투자기간 이내 1 Cycle로 제한(투자 → 회수 → 재투자)

### 3. 주요 출자조건

#### 3-1. 블라인드, 모펀드 제안방식

항 목	내 용													
	PEF	PDF	PEF_루키											
최 소 결성금액	○ 1,875억원 이상 또는 1,250억원 이상	○ 각 1,000억원 이상	○ 각 625억원 이상 (단, 750억원 이내)											
모 펀 드 출자비율	○ <u>약정총액의 40% 이내</u> (사후적 매칭 선택 시 98% 이내)	○ <u>약정총액의 50% 이내</u> (사후적 매칭 선택 시 98% 이내)	○ <u>약정총액의 60% 이내</u> (사후적 매칭 선택 시 99% 이내)											
	○ 후순위는 항상 동일한 비율로 출자하며, 중순위는 모펀드 출자액의 약 14.97%를 한도로 운용사가 제안하되 한국성장금융이 최종 출자규모 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선순위*</th> <th>중순위*</th> <th>후순위</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출자비율</td> <td>약 69.84%</td> <td>약 14.97%</td> <td>약 15.19%</td> <td>100.0%</td> </tr> </tbody> </table>					구 분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합계	출자비율	약 69.84%	약 14.97%	약 15.19%
구 분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합계										
출자비율	약 69.84%	약 14.97%	약 15.19%	100.0%										
* 최종 중순위 출자규모에 따라 비율 변경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제안서 엑셀양식 참조														
운 용 사 출자비율	○ 약정총액의 2% 이상		○ 약정총액의 1% 이상											
	○ 운용사는 최소 모펀드와 동일한 순위와 비율로 출자 하여야 함													
존속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	○ 펀드 결성일로부터 8년 이내	○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											
투자기간	○ 펀드 결성일로 부터 5년 이내	○ 펀드 결성일로 부터 4년 이내(재투자기간은 투자기간 +2년)	○ 펀드 결성일로 부터 5년 이내											
관 리 보 수	○ 관리보수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운용사 측에서 아래 관리 보수율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제안													
	○ 단, 성과보수에서 Full Catch-up 선택 시 상기 관리보수율을 하향하여 적용할 예정으로, 관련 취지를 반영하여 운용사측에서 별도 제안 가능													
	<b>리그구분</b>	<b>기간구분</b>	<b>관리보수율</b>											
			<b>주목적</b>	<b>비주목적</b>	<b>미투자</b>									
	PEF	투자기간 중	1.7% 이내	1.3% 이내	1.0% 이내									
		투자기간 이후	1.6% 이내	1.2% 이내										
	PDF	투자기간 중	1.4% 이내	1.0% 이내	0.8% 이내									
투자기간 이후		1.3% 이내	0.9% 이내											
PEF(루키)	투자기간 중	1.9% 이내	1.5% 이내	1.2% 이내										
	투자기간 이후	1.8% 이내	1.4% 이내											
성 과 보 수	<b>구분</b>	<b>성과보수 기준</b>												
	PEF 및 PEF(루키)	기본 : 기준수익률(6%) 초과 시 초과이익의 20% 이내												
		Full Catch-up(운용사가 선택 가능) : 펀드 수익률이 8% 초과 시 펀드 수익의 20% 이내												
	PDF	기본 : 기준수익률(6%) 초과 시 초과이익의 10% 이내												
Full Catch-up : 해당사항 없음														

항 목	내 용		
	PEF	PDF	PEF_루키
추 가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수익률* 초과 시 모펀드에 지급될 초과이익(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재원으로 추가 성과보수 지급 : 최대 +25%p 이내</li> <li>* 기준수익률은 6%를 기본으로 하되, Full Catch-up 적용 시 8% 적용</li> </ul>		
	투자 구분	사후적 구조조정 재기지원목적 투자	주력산업 투자
	PEF	약정총액 40% 이상 투자 시 최대 +10% 이내	약정총액 20% 이상 투자 시 최대 10%이내
	PEF(루키)		
PDF	약정총액 40% 이상 투자 시 최대 +15% 이내		
* 선정 후 출자자 및 운용사 간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성과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사가 지급받은 추가 성과보수를 재원으로 투자기업과 운용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li> </ul>		
납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납 또는 분할납</li> </ul>		
핵 심 운 용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3인 이상 참여</li> <li>○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하고, 투자경력 5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이 참여할 것</li> <li>-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이 4년 이상일 것</li> <li>*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입증 가능할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경력 5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 참여</li> <li>*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입증 가능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은 투자기간 만료 또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다른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겸임을 제한하며, 제안서 작성 시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을 지정하여 제출</li> <li>○ 펀드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정관(또는 규약)에 기재</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구조조정사업 등 한국수출입은행법에 해당되는 업무에 투자하여 실적을 달성하여야 함</li> <li>○ 구체적인 투자비율은 한국성장금융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실적산정방식은 선정운용사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li> <li>※ 공고문 내 붙임자료(Page 10)를 참고</li> </ul>		

### 3-2. 프로젝트, 운용사 제안방식

항 목	내 용										
모 펀 드 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순위는 항상 동일한 비율로 출자하며, 중순위는 모펀드 출자액의 약 14.97%를 한도로 운용사가 제안하되 한국성장금융이 최종 출자규모 결정</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선순위*</th> <th>중순위*</th> <th>후순위</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출자비율</td> <td>약 69.84%</td> <td>약 14.97%</td> <td>약 15.19%</td> <td>100.0%</td> </tr> </tbody> </table> <p>* 최종 중순위 출자규모에 따라 비율 변경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제안서 엑셀양식 참조</p>	구 분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합계	출자비율	약 69.84%	약 14.97%	약 15.19%	100.0%
구 분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합계							
출자비율	약 69.84%	약 14.97%	약 15.19%	100.0%							
운 용 사 출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심사 시 펀드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운용사는 최소 모펀드와 동일한 순위와 비율로 출자하여야 함</li> </ul>										
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li> </ul>										
투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li> </ul>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li> </ul>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기준수익률(6%) 초과 시 초과이익의 20% 이내</li> <li>○ (선택) Full Catch-up : 펀드 수익률이 8% 초과 시 펀드 수익의 20% 이내 (단, Full Catch-up 선택 시 상기 관리보수율을 하향 적용 예정으로, 관련 취지를 반영하여 운용사 별도 제안 가능)</li> </ul>										
추 가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사항 없음</li> </ul>										
성과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사항 없음</li> </ul>										
납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 없음(일시납, 수시납, 분할납 등)</li> </ul>										
핵 심 운용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운용인력 총 1인 이상 참여</li> <li>○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5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이 참여할 것</li> <li>* 투자경력 :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입증가능 하여야함</li> </ul> </li> <li>○ 핵심운용인력의 겸임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안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li> <li>○ 펀드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정관(또는 규약)에 기재</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출입은행법에 해당되는 투자 의무는 없으나, 부합하는 투자일 경우 실적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li> <li>※ 공고문 내 붙임자료(Page 10)를 참고</li> </ul>										

### 3-3. 공통사항

항 목	내 용						
이익배분 및 손실분담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률별 이익배분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준수익률 이하</b> : 각 출자자들의 기준수익률에 달할 때까지 지분율에 따라 배분</li> <li>- <b>기준수익률 초과</b> : 중·후순위 출자자는 추가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로 하위펀드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 보다 2%p를 초과하는 이익 발생 시 초과이익 배부에 대해서 우선수취 발생하며, 잔여 초과이익을 출자자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로 제안</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출자자</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우선수취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후순위 출자자</td> <td>후순위 출자자는 후순위 보강의 대가로 선순위 및 중순위 출자자 앞 초과수익의 10%를 우선 수취(단, 후순위 출자금액 한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순위 출자자</td> <td>중순위 출자자는 중순위 보강의 대가로 선순위 출자자 앞 초과수익의 일정 비율(5%를 한도로 중순위 출자규모에 따라 한국성장금융이 결정)을 우선 수취(단, 중순위 출자금액 한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 시 「<b>후순위 출자자 → 중순위 출자자 → 선순위 출자자</b>」 순으로 부담</li> </ul>	출자자	우선수취 방법	후순위 출자자	후순위 출자자는 후순위 보강의 대가로 선순위 및 중순위 출자자 앞 초과수익의 10%를 우선 수취(단, 후순위 출자금액 한도)	중순위 출자자	중순위 출자자는 중순위 보강의 대가로 선순위 출자자 앞 초과수익의 일정 비율(5%를 한도로 중순위 출자규모에 따라 한국성장금융이 결정)을 우선 수취(단, 중순위 출자금액 한도)
출자자	우선수취 방법						
후순위 출자자	후순위 출자자는 후순위 보강의 대가로 선순위 및 중순위 출자자 앞 초과수익의 10%를 우선 수취(단, 후순위 출자금액 한도)						
중순위 출자자	중순위 출자자는 중순위 보강의 대가로 선순위 출자자 앞 초과수익의 일정 비율(5%를 한도로 중순위 출자규모에 따라 한국성장금융이 결정)을 우선 수취(단, 중순위 출자금액 한도)						
출 자 자 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자는 국내 기관투자자, 법인이 원칙</li> <li>- 단, 개인출자자(운용인력, 특수관계인 등), 타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신탁 등), 해외출자자 등은 한국성장금융과 사전협의</li> </ul>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li> <li>○ 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li> <li>○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li> </ul>						
회 계 감 사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li> </ul>						
펀 드 전자보고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li> <li>○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li> <li>○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성과정에서 보수구조 등 공고 조건에 대한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펀드 조성목적 및 주요 출자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li> <li>○ 중순위 요청액 및 루키리그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성장금융과 협의 필요</li> <li>○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시행 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해야 함</li> <li>○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 결성과정에서 한국성장금융과 개별협의를 통해 결정</li> </ul>						

### 3-4. 루키리그 별도 안내사항

항 목	내 용
루키리그 신청자격 및 심사	<p>①~③에 모두 해당되는 운용사에 한해 루키리그 지원 가능</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10px;"> <p>① 출자공고 기준일 현재 설립 후 5년 이내*의 법인 * '16.01.01 이후 설립</p> <p>② 블라인드 펀드 운용 규모가 약정총액 기준 500억원* 이내 * 제안서 작성 기준일 현재 제안사가 운용하였거나, 운용할 블라인드펀드 약정총액의 합계로, 결성 시점에 투자대상이 확정되어 있는 펀드는 프로젝트펀드, 결성 시점에 투자대상이 확정되지 않는 펀드는 블라인드펀드로 간주</p> <p>③ 한국성장금융의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바 없는 운용사</p> </div> <p>○ 루키리그 제안 운용사는 상기 분류 기준에 의거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제안서 접수 시 펀드운용규모 및 업력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필요 시 한국성장금융과 협의 ** 자료 제출시 금감원 공통업무자료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 현황' 및 벤처투자정보센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시스템(DIVA)' 등 참조</p> <p>○ 제안 운용사의 루키리그 해당 여부 확정된 이후 심사 진행 예정</p> <p>○ 루키리그 내 공동 운용(Co-GP)시에는 각각 자격요건 충족 필요</p>

## 【붙임1】 주목적투자 관련 참고자료

### ■ 구조조정 대상기업 정의

구 분	대상기업 정의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1)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대상기업
	(2) 기업재무안정PEF에 허용된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에 정의된 기업
	(3)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업
	(4) 기타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
	(5) 코로나19 피해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 업체(단, 호텔업 등 부동산임대업 성격 제외) -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피해관련 P-CBO 보증사업’ 선정업체 -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자업체 - 이 외 코로나19 피해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정의 된 기업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나 변제대상으로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80% 이상을 미상환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 (단, DIP Financing으로 투자하는 경우 회생절차 종료 이후 3년 미경과 기업 포함)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장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3)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부실장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 ■ 재기지원 목적 투자 정의

구 분	투자의 유형
㉓DIP Financing	○ 대상기업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 - 자금대여, 사채 및 주식연계채권 인수 등 부채성 투자(단, 인수 금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㉔회사 보유자산 매입	○ 대상기업의 자산매각,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입 - Sale and Lease Back, 대상기업에 우선매수권, Call Option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
㉕조기할인변제	○ 회생절차 개시 후 추가 변제 시 채권단 등의 합의하에 절차종결하고자 하는 기업에 투자
㉖M&A	○ 대상기업이 인수 합병(M&A)을 통하여 정상화 시도하는 경우
㉗NPL	○ 대상기업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㉓,㉔,㉕,㉖를 통해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추가 투자기회를 확보하는 경우

## 【붙임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부합하는 투자

■ 운용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약정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며, 구체적 투자비율은 한국성장금융과 추후 협의하여 결정함

- ① 한국수출입은행이 포함된 채권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의 인수 또는 동 기업 앞 유동성 공급 등의 투자
- ②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부합하는 투자

## 4. 선정 배제, 취소 기준

### □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 ※ 다만, 본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내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배제사유에서 제외 가능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과거 5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선정 취소

- 펀드의 목표결성금액(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 사후적 매칭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정관(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제재 사항

### □ 제재 사항

- 결성 시한(협약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투자기간 종료시점에 사후적 매칭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투자기간 종료시점)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규상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정관(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1년 이하 출자 제한하며,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
- 선정된 펀드 중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간 출자 제한하고,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기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특히,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5년간 출자 제한함

## 6.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사(서류) → 현장실사 → 2차 심사(구술) → 최종선정
- 서류 심사를 통과한 제안 건에 한해 현장심사 및 심사 실시

□ 선정 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2021.06.04.(금)	제안서 접수	접수시간 09:00~16:00
2021.06.30.(수)	최종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보

주)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서류) 평가기준 : 온라인 출자설명회에서 안내 예정

## 7. 지원방법

□ 지원방법

- 한국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일시 내 제출
  - \* 제출서류 및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관련 양식은 출자 설명회 일자까지 별도 공지 예정)
- 제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10부)를 제출
  - 분량 : 20페이지 이내 (발표 당일 PT자료, 파일 별도 지참)

□ 온라인 출자설명회

○ 일 시\* : 2021년 5월 20일 (화) 홈페이지 게시

\* 단, 출자설명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 변경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9. 접수처 및 문의방법

□ 접수처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5층)

□ 문의방법 : 한국성장금융 구조혁신1팀 (02-2090-9122)

E-mail : mansunyoon@kgrowth.or.kr

2021년 5월 17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 공고일, 접수일 등 일정은 내·외부사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